

4회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해양수산분야 신규 대상기업 모집 공고

산업별 혁신기업에 종합적·적극적 금융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4회차 신규 지원대상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양수산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목적

- 다양한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게 종합적·적극적 금융 지원

2. 지원분야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9개 테마(46개 세부분야), 306개 품목

< 혁신성장 공동기준 >

| 9대 부문 | F&S Tech Sector 구분 | 비 고 |
|------------|--|-----------------------|
| ① 첨단제조·자동화 | Advanced Manufacturing and automation | 제조업, 소부장 |
| ② 화학·신소재 | Chemicals and Advanced Materials | 제조업, 소부장 |
| ③ 에너지 | Energy and Utilities | 그린뉴딜 |
| ④ 환경·지속가능 |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 그린뉴딜 |
| ⑤ 건강·진단 | Health and Wellness |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예방 등) |
| ⑥ 정보통신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디지털 뉴딜 |
| ⑦ 전기·전자 | Microelectronics | 디지털 뉴딜 |
| ⑧ 센서·측정 | Sensors and Instrumentation | 디지털 뉴딜 |
| ⑨ 지식서비스 | - | 핀테크, 서비스 혁신 |

3. 지원내용

- 혁신기업의 혁신성·기술성을 감안한 정책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해 금융지원
-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보증·투자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한도 확대,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상 혜택 부여
- 금융지원 외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 병행

※ 유의사항 : 선정 후 금융지원 신청 시 금융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통과 시에 금융지원 실행을 결정

4. 선정규모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해양수산분야 신규 대상기업 20개사 내외

5. 신청자격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306개 품목 관련 기술, 제품 보유 또는 개발 예정인 해양수산 기업

< 혁신성장 공동기준 적용 방법 >

- 회사 영위사업(또는 보유기술) 중 특정사업(또는 기술)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과 부합하면 적용 가능
- 기업의 사업분야, 보유기술 또는 제품이 공동기준 품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함
 - * 직접적 연관 - 품목의 설명과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
 - 간접적 연관 - 품목의 전·후방 산업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
- 연관성과 함께 기업의 사업분야, 보유기술 또는 제품이 가지는 차별성*이 설명되어야 함
 - * 범용성 제품·부품이나 도·소매와 같은 단순 사업형태가 지양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 기술 또는 제품의 우수성 등을 포함
- 기업의 사업분야, 보유기술 또는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이 설명되어야 함
 - 품목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R&D 실적(특허 출원, 정부인증 등)을 바탕으로 실용화 단계*에 있을 경우 적용 가능
 - * 제조업의 경우 R&D를 통한 양산준비단계에 있어야 하며,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 특허를 취득하고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했거나 전임상시험에 진입한 경우 실용화단계라고 볼 수 있음

*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및 적용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2] 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약식 매뉴얼 및 [별첨3] 2020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참조

6. 지원제외

- 해양수산부 또는 타 부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기선정된 기업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 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 *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 의견인 경우는 제외
- 최근 3년 평균 매출증감율이 10% 이상 감소인 경우
 - * 단, 감소폭이 지속 축소되는 경우는 제외
-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인 경우
- 직전년도 부채비율 업종이 업종 평균* 3배 이상인 경우
 - * 한국표준산업 기준(제10차, 세세분류) 총 1,196개 업종별 평균
 - ** 단, 설립 이후 7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7. 우대사항 (가점)

| 구 분 | 가점 |
|---|------|
| '20년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우수기업 | 각 1점 |
| '20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팀 | |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기업 | |
| '21년 예비 오션스타 선정기업 | 각 2점 |
| 혁신성장 공동기준 관련 정부 R&D과제에 성공하여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 | |

*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부여는 최대 5점에 한함

8. 신청방법

| 구분 | 내용 |
|-------------------|--|
| 접수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 10. 18.(월) ~ 2021. 10. 27.(수) 17시 |
| 접수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www.kimst.re.kr/startup)을 통해 접수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
| 서식교부 및 접수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첨부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창업투자정보시스템에 업로드 및 제출 * 신청서는 HWP파일로 제출, 나머지 서류는 스캔본 혹은 PDF파일로 제출 |
| 유의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접수를 위해 창업투자정보시스템 기업등록 및 회원가입 필수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결과 발표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9. 제출서류

|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수량 |
|----------|----|--|-----|
| 공통 서류 | ①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신청서(표지 직인 포함) | 1부 |
| | ②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 | ③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1부 |
| | ④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 1부 |
| | ⑤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으로 출력) | 1부 |
| | ⑥ | 최근 3개년도('18~'20)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 제출 * '19~'21년 창업기업의 경우, 제출 가능한 년도에 한하여 제출 | 1부 |
| 해당시 | ⑦ | 우대사항(가점) 관련 증빙서류 * [별첨1] 신청서 '우대사항' 항목에 관련 내용 기재 필수 | 각1부 |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10. 선정방법

- 요건심사, 서면평가 및 금융지원 결격요건 검토를 통한 선정
 - (요건심사) 제출서류, 신청자격, 지원제외 사항 등 검토
 - (서면평가) 기업의 경영진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평가

< 서면평가 항목 및 배점 >

| 평가항목 | 평가 고려사항 | 배점(점) |
|------------|------------------------|------------|
| 경영진 역량 | ○ 경영자의 역량 및 사업추진 능력 | 20 |
| | ○ 경영진 구성의 적정성 | |
| | ○ 최근 3년간 인력(고용)현황 | |
| 기술성 | ○ 기술(제품)의 혁신성 및 경쟁우위 | 30 |
| | ○ 기술개발단계 및 사업화 정도 | |
| | ○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 보유 | |
| 시장성 | ○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성 | 25 |
| | ○ 진입장벽, 시장규제 및 경쟁상황 | |
| | ○ 국내외 수주규모 및 점유확대 가능성 | |
| | ○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 가능성 | |
| 사업성 | ○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 25 |
| | ○ 매출성장성 및 영업수익성 | |
| | ○ 투자가능성 및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 | |
| 합 계 | | 100 |

- (최종선정) 금융지원 결격요건 검토 및 최종 선정

*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를 통해 신청기업별 금융지원 결격요건 검토 후, 4회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최종 선정 및 발표

11.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표지에 혁신성장 분류체계에 따른 품목코드 필수 작성
 - * 예) 신재생에너지분야 해양에너지(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 → C10005
- 선정 후 금융지원 신청 시 금융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통과 시에 금융지원 실행을 결정
- 향후, 선정기업 정기 점검에 따라 기술 노후화 등 혁신성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혁신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12. 문의처

| 소속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정책과 | 양동곤 사무관 | 044-200-6225 | tera5t@korea.kr |
| | 이경선 주무관 | 044-200-6229 | masinblade@korea.kr |
|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 최재욱 팀장 | 02-3460-4055 | jwchoi@kimst.re.kr |
| | 홍성준 연구원 | 02-3460-4003 | jayspace@kimst.re.kr |